제424회 임시회 '25. 3. 13.(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 O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지원 및 복지수 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O 현재('24. 12. 기준)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기관은 총 1,131개소이며, 기 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32,769명임.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충청북도 시군별 장기요양 현황(시설・종사자)>

(단위 개소, 명, 24.12.31.기준)

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현원)
계	1,131	32,769
청주	486	15,415
충주	168 4,	
제천	124	2,631
보은	32	
옥천	57	2,365
영동	59	
증평	29 799	
진천	49	
괴산	40	941
음성	66	1,372
단양	21	429

- 충북은 이미 2023년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재 도 내 장기요양요원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신체적·정신적 소진 위험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노인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 증진 사업 및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O 안 제6조(지원 사업)에서는, 제6호에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업'을 신설하였음.
 - 이미 서울, 광주, 경기 등 타 시도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거나, 찾아가는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장기 요양요원의 자존감 회복 및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바 본 호의

신설은 내용상 타당함.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서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호의 신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O 안 제6조의2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복지수당 지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 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현재 복지포인트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5개 시군(충주, 제천, 괴산, 음성, 진천)에서 자체 예산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내용적으로도 타당함.

<충청북도 시군별 장기요양요원 수장 지급 현황>

대상자	금액(월, 년)	비고
장기요양요원 전체 (충주)	3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3개월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장기요양요원 전체 (제천)	5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장기요양요원 전체 (괴산)	2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장기요양요원 전체 (음성)	30,000원/월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전체 (진천)	3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24.7.부터 지급

- 제2항에서는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지원 및 복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O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